

CJ ENM 커머스부문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공포

CJ ENM 커머스부문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J ENM 커머스부문은 시청자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를 새롭게 제정하고 이를 공표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2017년 7월 10일

개정 2018년 8월 29일

개정 2020년 4월 01일

개정 2021년 3월 26일

개정 2026년 7월 06일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CJ ENM 커머스부문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운영 내규는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과 직무)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 회의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후보자 공모)

-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 ② 후보자 공모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 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다.

제6조(후보자 추천)

- 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 제37조의 시청자 위원 추천 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 ② 후보자 공모 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 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추천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을 때에는 추천사유가 포함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사유)

-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청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 제37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후보자 선정)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 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9조(위원 선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편성위원회 또는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CJ가 위촉한다.
- ③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역할 등은 CJ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④ 위원 선정 시 추천단체 분야 모두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 선정 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임기 및 연임)

- ① 위원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 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② 연임 여부는 위원의 출석, 의견제시, 위원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10명 이상이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소집)

-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 ②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 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대해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

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 ③ 위원회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위원의 발언 내용, CJ의 답변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단,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 ④ 시청자가 CJ 홈페이지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4조(해촉)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시청자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 2. CJ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때.
 - 3. 방송의 공정성을 손상시키거나, 예상되는 행위를 할 때.
 - 4. 개인(소속단체)의 영리를 위한 요구를 할 때.
 - 5.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제2항의 선정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소관부서) 위원회와 관련된 지원 및 운영 업무는 전략지원팀에서 담당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위원은 차기위원회 구성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대외공표) 이 내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표한다.